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 제3조에서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점자교원의 양성’을 비롯하여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한국점자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하는 것으로 점자교원 자격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 위원회 내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절차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5. 20. ~ 2026. 6. 29.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급별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국립국어원장은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급별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u> <u>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u> <u>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u> <u>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③ <u>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u> <u>심의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u> <u>심의로 본다.</u> ④ <u>국립국어원장은 영 제3조의2</u> <u>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심사</u> <u>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사</u> <u>업무를 수행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